

예 산 총 칙

2022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478,561,087	14,356,833
일반회계		465,715,688	13,971,471
특별회계		12,845,399	385,362
기타특별회계	기타특별회계	12,845,399	385,362
	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124	4
	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	3,841,638	115,249
	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	1,617,619	48,529
	건축진흥특별회계	100,000	3,000
	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	94,610	2,838
	상수도특별회계	5,694,877	170,846
	수질개선특별회계	97,801	2,934
	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	639,976	19,199
	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	758,754	22,763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636,43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3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